

#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

의안 번호	43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09. 1. 30.

발 의 자 : 김인식 의원 외 6인

## 1. 제안이유

회의운영상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의장단 선출제도와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의장단 선출시 사전 후보자 등록제도 신설(중복등록 금지 조항 포함)(안 제8조의2).
- 나. 후보자의 정견 발표제도 신설(안 제8조의2).
- 다. 의장·부의장 보궐선거 출마 시 다른 직의 사임제도 신설(안 제12조의2)
- 라. 감표위원 선정시 추첨제도 신설(안 제47조)
- 마. 투표지 보관 및 공개제도 신설(안 제47조의2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없음
- 다. 기 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##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

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의장·부의장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) ①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2일 전일의 공무원 근무시간까지 의회사무처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. 다만 후보자 등록은 중복으로 할 수 없다.

②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.

③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다선, 연장자 순으로 한다.

④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의장·부의장 보궐선거에서 다른 직의 사임) ①의장 또는 부의장 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의원이 다른 직(부의장·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다)을 가진 경우에는 선거일 2일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임은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
제4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투표할 때에는 의장의 추첨에 의해 2인의 감표위원을 선정하되, 그 의원의 참여하에 투·개표 상황을 점검·계산하게 한다. 다만, 의장 및 당해 선거에 등록한 후보의원은 감표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.

제3장제5절에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7조의2(투표지 보관 및 공개) ①의장은 투표지를 당해 선거의 당선자 임기동안 보관한다.

②투표지 공개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되, 의원에 대해서만 공개할 수 있다.

### **부칙**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<u>제8조의2(의장·부의장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)</u> ①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2일 전일의 공무원 근무시간까지 의회사무처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. 다만 후보자 등록은 중복으로 할 수 없다.</p> <p>②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.</p> <p>③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다선, 연장자 순으로 한다.</p> <p>④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
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<u>제12조의2(의장·부의장 보궐선거에서 다른 직의 사임)</u> ①의장 또는 부의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의원이 다른 직(부의장·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다)을 가진 경우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임은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<b>제47조(투표절차) ①(생략)</b></p> <p>②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의원의 참여하에 투·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.</p> <p>③~④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<b>제47조(투표절차) ①(현행과 같음)</b></p> <p>②투표할 때에는 의장의 추천에 의해 2인의 감표위원을 선정하되, 그 의원의 참여하에 투·개표 상황을 점검·계산하게 한다. 다만, 의장 및 당해 선거에 등록된 후보의원은 감표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.</p> <p>③~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47조의2(투표지 보관 및 공개) ①</b>의장은 투표지를 당해 선거의 당선자 임기 동안 보관한다.</p> <p>②투표지 공개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되, 의원에 대해서만 공개할 수 있다.</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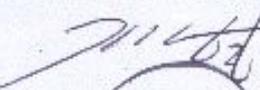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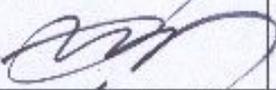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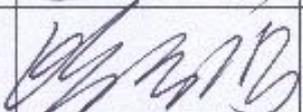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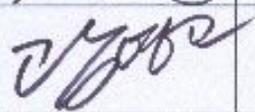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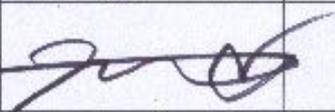
# 관 계 법 령

## 지방자치법

제71조(회의규칙)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

#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

## 발 의 자 서 명

의 원 명	서명·날인	비 고
주 신 호		
김 학 유		
김 인 국		
박 수 현		
김 영 고		
박 희 권		
양 영 세	